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1
----------	-------

제출년월일 : 2015.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협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나. 지도위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도위원의 위·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 마련(안 제2조제2항 신설)

다.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항목 용어 변경(안 제3조)

라. 지도위원의 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3항)

마.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3항 ~ 제6항 신설)

-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동 협의회 구성, 동 협의회 회장으로 구 협의회 구성

- 구·동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호선으로 선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 의결로 결정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2. 12. ~ 3. 4.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3.12.)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각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동장은 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4조의 제목 “(지도위원의 임무등)”을 “(지도위원의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4조제2항 중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의 가족 기타”를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3.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4. 지도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20인”을 “20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증표교부)”를 “(증표 교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필요경비등 지원)”을 “(필요경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내에서 필요 경비”를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를 “지도위원의”로, “있게 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있도록”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④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⑤ 구·동 협의회 의 회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소관 협의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그 밖에 구·동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 의 의결로 정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기존의 별표 1) 중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으로, “① 내지 ⑥”을 “① 부터 ⑥까지”로. “비 고”를 “비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도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시작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u> <u>의위촉에관한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u>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u> <u>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u> <u>조의 규정에 의하여</u> <u>청소년의</u> <u>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마</u> <u>포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u> <u>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u> <u>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청소년</u> <u>기본법</u> 」 제27조에 <u>따라</u> ----- ----- ----- <u>서울특별시 마</u> <u>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u> <u>위촉절차 등에</u> ----- -----
제2조(<u>지도위원의 위촉</u>) <u>지도위원</u> <u>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u> <u>“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0</u> <u>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u> <u>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u> <u>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u> <u>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u> <u>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u> <u>중에서 각동 관할 지역안의 청</u> <u>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u> <u>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u> <u>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u> <u>촉한다.</u>	제2조(<u>지도위원의 위촉</u>) ① <u>서울</u> <u>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u> <u>(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u> <u>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u> <u>는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u> <u>단체의 장, 각 동장, 경찰관서의</u> <u>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u>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u> <u>“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u> <u>다.</u> 1. 「 <u>청소년 기본법</u> 」 제21조에

<신 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생 략)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등)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3. (생 략)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동장은 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등) ① ----- 각 호-----.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의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

지도위원-----
-----.

③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3.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4. 지도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임기) -----
-----.

<단서 삭제>

제6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증표교부) (생략)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또는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제6조(지도위원의 수) -----
----- 20명 -----
- 해당 -----
----- 그 밖에 -----

-.

제7조(증표 교부) (현행과 같음)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
----- 각 호 -----

----- 범위에서 필요경비 -----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

----- 있도록 -----

-----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삭 제>

에서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구·동 협의회 의 회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소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그 밖에 구·동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 의 의결로 정한다.